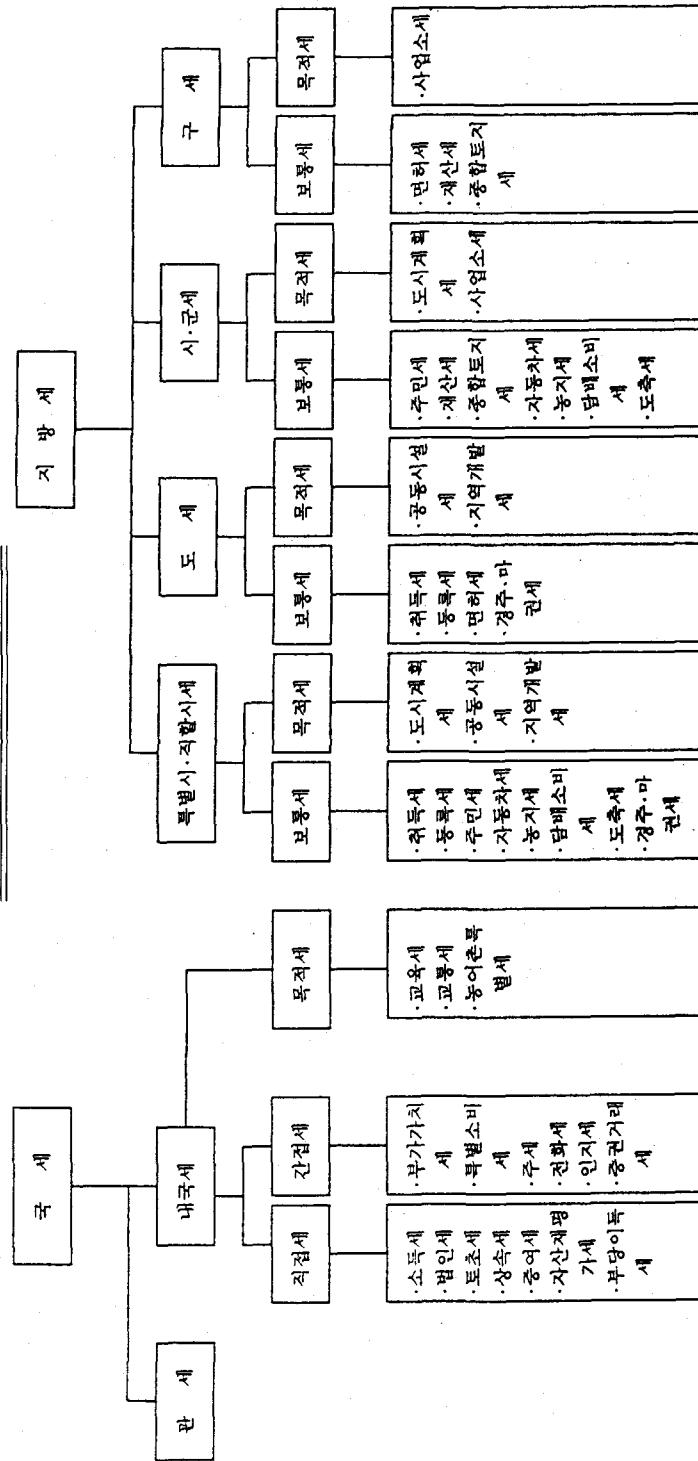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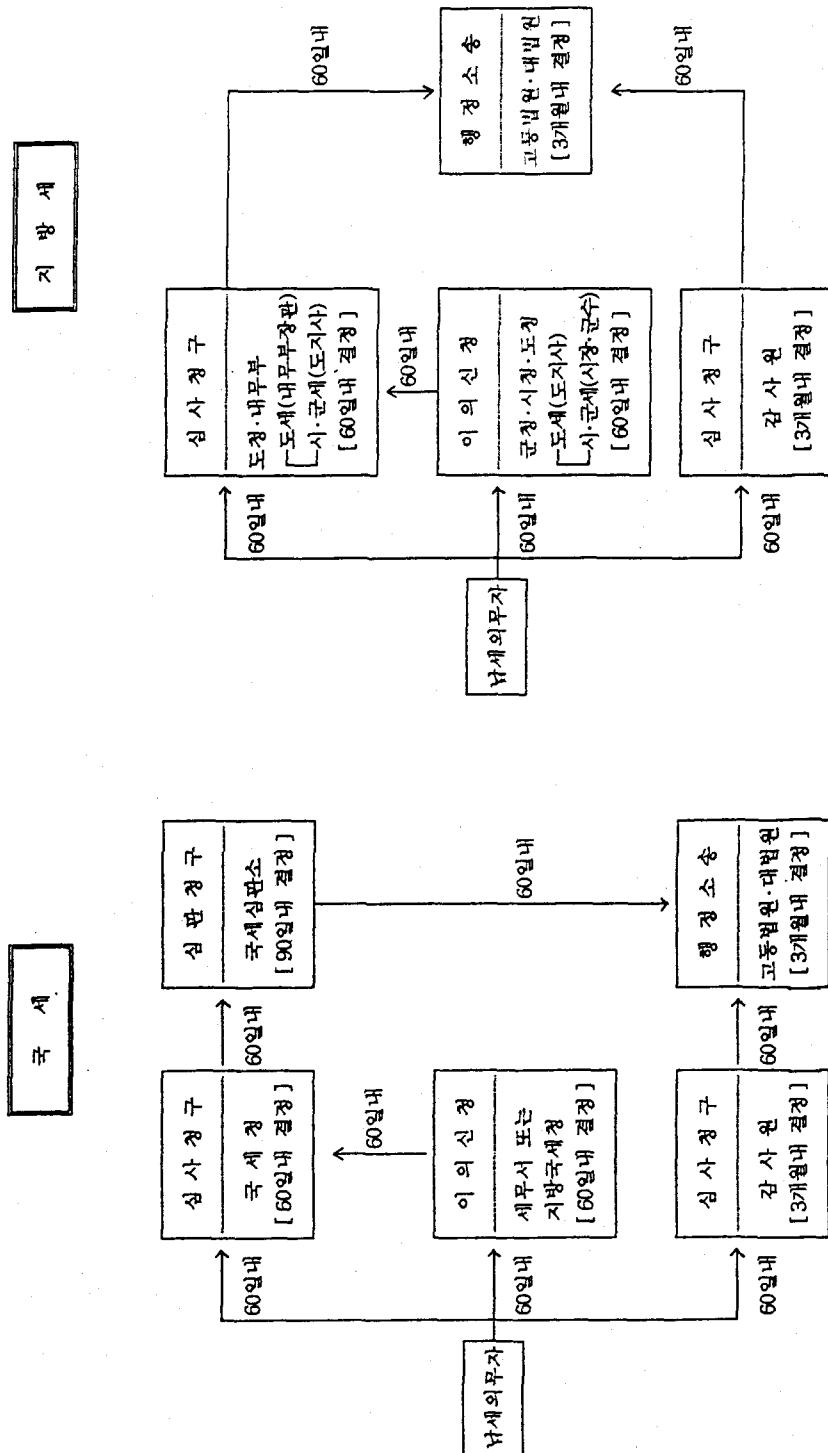
## 13. 住宅事業關聯稅制

資料提供：韓國住宅協會 制度改善部

###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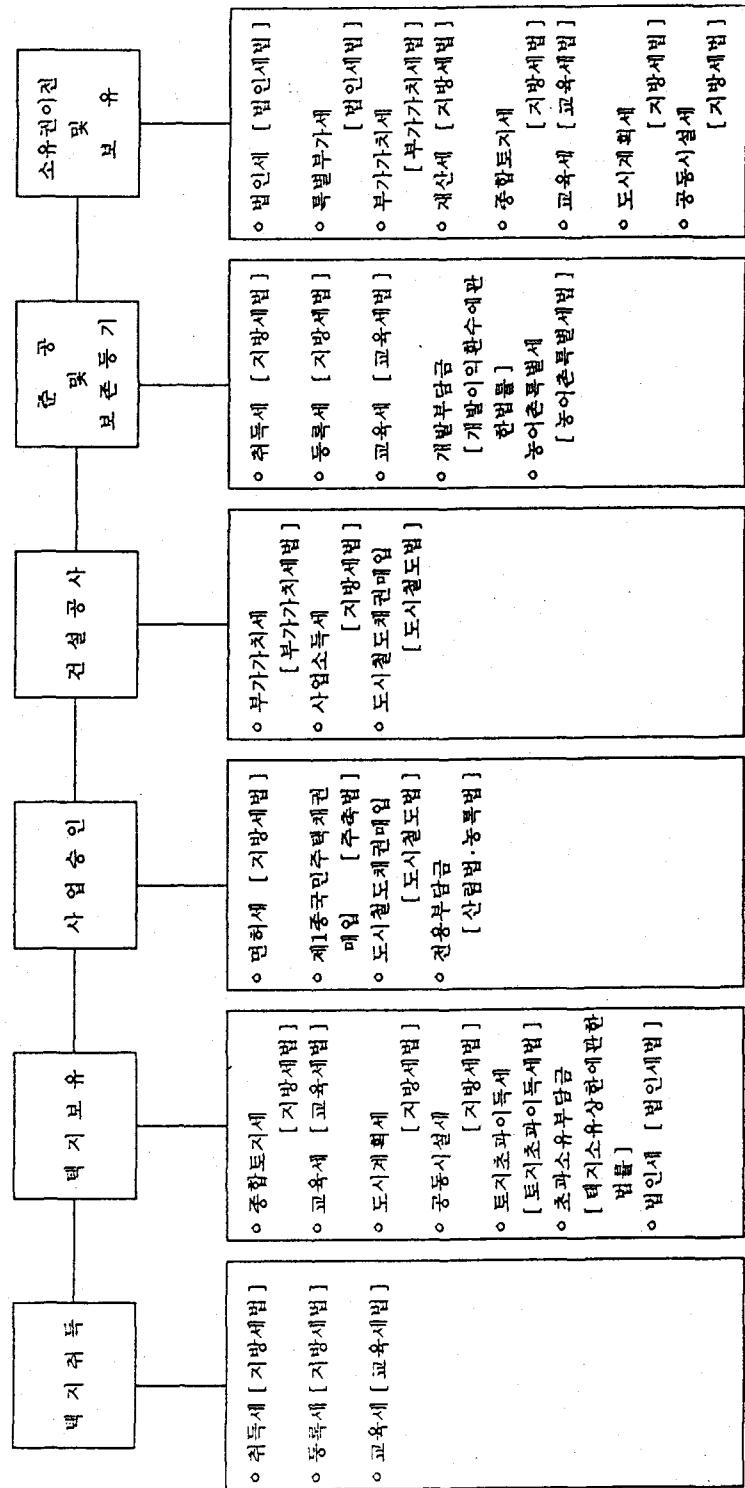


## 불복청구절차도



## 주택사업관련 세제

### ○ 주택사업관련 제세 일람표(총괄)



# I. 국 세

## 1. 법인세(법인세법)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의 소득</li> <li>◦ 청산소득</li> </ul>	법 제2조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li> <li>◦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li> </ul> <p>※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금불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금불산업 금액 = 지급이자 × 차산(비업무용부동산·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가액 합계 액 / 총차입금</li> <li>◦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 용부동산 : 일정기 한내에 고유업무에 미사용시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li> <li>• 부동산매매업(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 규칙 제18조 한 매매 용부동산 : 2년</li> </ul> </li> </ul> <p>•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 3년</p> <p>•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 2년</p> <p>•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용 토지 : 3년</p> <p>-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도 지 :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업무용에서 체외되는 부동산</li> </ul>	<p>법 제1조</p> <p>법 제8조</p> <p>법 제18조의3</p> <p>법 제43조의2</p>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부동산 취득후 법력의 규정에 의해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이 소설·철거 또는 무너진 부동산</li> <li>* 소설·철거 또는 무너진 날부터 2년(자전철거 시 1년)</li> <li>• 기업 부설연구소용부지·공장용부지·사회간접자본시설용부지·주택신축용토지 및 아파트 형 공장신축용토지 : 3년</li> <li>- 휴·폐업 또는 이전용 부동산 : 휴업·폐업·이전한 날부터 2년</li> <li>-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 구획단위사업이 완료되어 건축가능일로부터 2년</li> <li>•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공장용부지·사회간접자본시설용부지·주택신축용토지 및 아파트 형 공장신축용토지 : 3년</li> <li>-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기를 받아 분양용으로 조성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대지 또는 분양후 환수·환매한 공업용토지 : 최초 허가일로부터 5년</li> <li>- 조세감면규제법 적용대상토지</li> <li>• 산업 합리화대상 지정기업의 처분부동산 :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li> <li>• 개발사업토지(특별부가세 50% 감면) 등 : 보유기간</li> <li>- 금융기관이외의 일반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li> <li>-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부동산 : 최초기준면적의 1.5배이내 부동산</li> <li>-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li> <li>-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체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척공이 제한된 토지 :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벌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법인</li> </ul>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과 세 기 준 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비자를 받을 때에 궁공궁지로 체공한 토지 : 착공일로부터 궁공궁지로의 체공종료 일까지</li> <li>◦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경우 30일)이내 서면신고</li> <li>-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봄</li> </ul> </li> <li>◦ 중간예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li> </ul> </li> <li>◦ 법인세 과세 신고기간에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납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중소기업 45일)이내에 분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li> <li>•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초과세액의 50/100</li> </ul> </li> <li>- 물납 :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1,000만원 초과시 토개공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토지개발채권에 한해 납부 가능</li> </ul> </li> </ul>	<p>법 제 26조</p> <p>법 제 30조</p> <p>법 제 31조</p> <p>법 제 31조의2</p>
납세지 및 정 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li> <li>◦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li> </ul>	법 제 7조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8/100</li> <li>◦ 과세표준금액 1억원초과 : 1,8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0/100</li> </ul> <p>※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포함</p>	<p>법 제 22조</p> <p>법 제 22조의2</p>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신고, 장부비치·기장의무 불이행 : ① 산출세액의 20/100과 ②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li> <li>- 파소신고 : 미달금액 해당 산출세액의 10/100</li> <li>- 미납부·미달납부 : ① 미납부세액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미납부기간 × 4/10000(미납부기간이 2년 초과하는 기간 3/10000)와 ② 미납부세액의 10/100 중 큰 금액</li> <li>-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 원천징수액의 10/100</li> <li>- 대차대조표 공고 불이행 : ①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100과 ② 수입금액의 4 /10000 중 큰 금액</li> </ul> </li> <li>◦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기 한내 미납부시 : 체납된 세액의 5/100 가산</li> <li>- 체납된 세액 미납부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의 12/10000 증가산(단, 증가산금 징수기간이 60월 초과불가)</li> </ul> </li> </ul>	<p>법 제41조</p> <p>국세징수법 제21조.</p> <p>체22조</p>
면제 또는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의 규정에 의해 조작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의 개정·폐지로 인해 상법상의 회사로 조 칙변경하는 경우 : 청산소득에 대한 범인세 부과제 외</li> </ul>	법 제42조의3

## 2. 특별부가세(법인세법)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li> <li>*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점포임차권·영업권·특정시설이용권 등)과 서화·골동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li> </ul> <p>※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p> <p>-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포함) :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차면적 × 5배(도시계획구역내) 또는 10배(도시계획구역 외)]</p> <p>-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주거여전이 동일한 다른 지번 포함)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1995. 12. 31 이전 양도분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100 이하인 경우 및 ②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1996. 1. 1 이후 양도분부터)</li> </ul>	법 제59조의2 영 제124조의 3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li> </ul>	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li> </ul> <p>※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불가상승공제액(1996. 1. 1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p> <p>- 취득가액 = 취득가액 + 건설자금이자 + 차본적지출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건설(제작)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건설(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li> </ul>	법 제59조의2 영 제124조의 2 규칙 제59조 의 8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비용 :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제약서 작성비용·공중비용·인자대·소개비 등)</li> <li>- 물가상승공제액 = 취득가액 × 생상자를 가상승율 × 당해 연도 보유월수 / 12</li> <li>• 물가상승율 :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생산자를 가지수(보유기간 12월미만인 연도는 월간 생산자를 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함</li> <li>• 미등기 토지, 보유기간 2년 미만 토지 등을 물가상승공제 적용 배제</li> <li>*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봄</li> </ul>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li> <li>- 법인세 신고납부와 동시에 신고·납부</li> </ul>	법 제59조의5
납세지 및 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li> </ul>	법 제38조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기 양도토지 등 : 과세표준금액의 40/100</li> <li>◦ 기타 : 과세표준금액의 25/100(1996.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20/100)</li> <li>*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li> <li>* 미등기 양도체외자산</li> <li>- 장기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에 의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li> <li>- 법인 규정 또는 법원처분에 의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li> <li>- 당해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분합에 해당하는 토지</li> </ul>	<p>법 제59조의4</p> <p>영 제124조</p> <p>법 제9의9</p>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에 대한 기산세 규정 적용</li> <li>◦ 법인세 법상의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li> <li>- 범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이 1/4 이하 이어야 함)</li> </ul> </li> </ul> <p>•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p> <p>•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p> <p>•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p> <p>*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 적용례제 : 1981. 1. 1 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과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타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 감면규제법상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li> <li>- 수도권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의 50% 세액 감면방법과 과세 이 연방법 중 택일</li> <li>-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도시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지정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특별부가세의 30/100(토지등 양도대금을 사업시행자가 발생하는 체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45/100) 세액 감면</li> </ul> </li> </ul> </li> </ul>	<p>법 제41조</p> <p>법 제59조의3</p> <p>법 제41조</p> <p>법 제59조의3</p> <p>법 제44조</p> <p>조감법 제44조</p> <p>조감법 제63조</p> <p>조감법 제63조</p>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면제 또는 감면	<p>•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 등 양도매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75/100) 세액 감면</p> <p>– 개발사업 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주공이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토개공이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 : 특별부가세의 50/100 세액 감면</li> </ul> <p>–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기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및 기숙사건설자가 건설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별부가세의 30/100(양도일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50/100) 세액 감면</li> </ul> <p>–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거주자·임대주택사업자)이 1986. 1. 1 이후 신축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의 50/100 세액 감면</li> <li>•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1995. 1. 1 이후 취득·임대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사설이 없는 주택)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 특별부가세의 100/100 세액 감면</li> </ul>	<p>조감법 제64조</p> <p>조감법 제66조</p> <p>조감법 제67조</p>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면제 또는 감면	<p>*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p> <p>-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중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목장용·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별부가세의 50/100 세액 감면</li> </ul> <p>*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중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 한함</p>	조감법 제68조

### 3.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구 분	부 용	근거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li> <li>◦ 재화의 수입</li> </ul>	법 제1조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목적의 유무와 무관</li> <li>–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li> </ul> </li> </ul>	법 제2조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공급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li> <li>–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li> <li>–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li> <li>–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li> </ul> </li> </ul> <p>* 예 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및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p> <p>※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청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단,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축법에 의해 사업체 회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체의 경우 : 승인된 사업체 회장의 분양가액</li> <li>–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일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li> <li>–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li> </ul>	<p>법 제13조 영 제48조</p>

구 分	내 용			근거법령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구분</td> <td style="width: 25%;">계속사업자</td> <td style="width: 25%;">신규사업자</td> <td style="width: 25%;">폐업자</td> </tr> <tr> <td>제1기</td><td>1. 1~6. 30</td><td>개업일~6. 30</td><td>1. 1~폐업일</td> </tr> <tr> <td>제2기</td><td>7. 1~12. 31</td><td>개업일~12. 31</td><td>7. 1~폐업일</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 및 확정신고</li> </ul>				구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제1기	1. 1~6. 30	개업일~6. 30	1. 1~폐업일	제2기	7. 1~12. 31	개업일~12. 31	7. 1~폐업일
구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제1기	1. 1~6. 30	개업일~6. 30	1. 1~폐업일													
제2기	7. 1~12. 31	개업일~12. 31	7. 1~폐업일													
	구분	1기분	2기분													
	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	1. 1~3. 31	4월 25일	7. 1~9. 30	10월 25일												
확정신고	1. 1~6. 30	7월 25일	7. 1~12. 31	8년 1월 25일												
* 과세특례포기자 : 특례과세기간(특례초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일반과세기간(특례 포기신고일의 다음달 1일부터 종료일)																
납세지 및 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li> <li>◦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는 업무총괄장소</li> </ul>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과세자 : 10/100</li> <li>◦ 과세특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전 1억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20/1000</li> <li>-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당해 공급대가의 <math>\frac{1}{3}</math>이 9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35/1000</li> </ul> </li> <li>◦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 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을 0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체적으로 비과세와 같고 매입시 정수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음</li> </ul>															

구 분	내 용	기준	근거법령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교부,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출처 별합신표 미체출·부실기재, 경정 세 입세액 공제 : 법인 2%(개인 1%)</li> <li>- 미검열, 매출처 별합제표 지연제출 : 법인 1%(개인 0.5%)</li> <li>- 매출처별·매출처별합제표 등록번호 차요기재 : 법인 0.2%(개인 0.1%)</li> <li>- 신고·납부 불성실 : 법인·개인 10%</li> <li>- 영세율과세 표준신고 불성실 : 법인·개인 1%</li> </ul> </li> <li>* 중복적용 배제</li> <li>○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 체납된 세액의 5/100 가산</li> <li>- 체납된 세액 미납부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의 12/1000 증 가산(단, 증가산금 징수기간이 60월 초과 불과)</li> <li>○ 장부비치·기장의무 불이행시 50만원이하의 벌금(과세특례자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징수법</li> <li>제 21조.</li> <li>제 22조</li> <li>조세법처벌법</li> <li>제 12조의3</li> </ul>	법 제 22조
면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액 :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택</li> </ul> </li> <li>• 상시 주거용건물(*사업을 위한 주거용→제외)</li> <li>• 부수토지의 범위 :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내→초과부분은 토지 의 임대료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 12조</li> <li>영 제 34조</li> </ul>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면제사항	<p>—점용주택(임대주택에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부분면적 &gt; 사업용건물부분면적 :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li> <li>• 주택부분면적 ≤ 사업용건물부분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의 임대로 봄</li> </ul> <p>◦ 토지의 공급 : 면제</p> <p>◦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 면제</p> <p>—국민주택규모(전용 85m<sup>2</sup>)이하의 주택</p> <p>—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 주축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p> <p>※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은 과세대상임</p>	<p>조세 감면 규제 법 제100조 및 제96조</p>

#### 4. 교육세(교육세법)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과세대상	○ 당해 조세의 납부세액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보험업자</li> <li>○ 특별소비세·주세의 납세의무자</li> <li>○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군등할주민세·경주마권세 및 자동차세(비업무용에 한함)의 납세의무자</li> </ul>	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과세표준</td><td style="width: 33%;">세율</td><td style="width: 33%;"></td></tr> <tr> <td>등록세액</td><td>20/100</td><td></td></tr> <tr> <td>재산세액</td><td>20/100</td><td></td></tr> <tr> <td>종합토지세액</td><td>20/100</td><td></td></tr> <tr> <td>군등할주민세액</td><td>10/100(단,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25/100)</td><td></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등록세액	20/100		재산세액	20/100		종합토지세액	20/100		군등할주민세액	10/100(단,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25/100)		법 제5조
과세표준	세율																
등록세액	20/100																
재산세액	20/100																
종합토지세액	20/100																
군등할주민세액	10/100(단,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25/100)																
과세기준일 및 납기	○ 당해 세액(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신고·납부시→그에 대한 교육세 신고·납부	법 제10조															
납세지 및 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 세무서장이 부과·징수</li> <li>○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 시장·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국고에 납입</li> </ul>	법 제10조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한내 미납부 및 미달납부시 : 미납부세액의 10/100 가산 정수</li> <li>*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li> </ul> </li> </ul>	법 제11조															
면제사항																	

## 5. 토지초과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법)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 휴 토 지 등 으로 부터 발생한 토 지 초 과 이 득</li> <li>- 유 휴 토 지 등 의 판정 : 과 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사실상의 현 황에 의 합 (단, 사실상의 현 황이 불분명한 경우 → 공부상의 등재 현 황에 의 합 )</li> <li>※ 유 휴 토 지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 지</li> <li>- 토 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된 경우 : 사용금지 또는 제 한된 기간</li> <li>- 건축물 신축용 나 대지 의 취득</li> <li>• 지 상 정 치 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신축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li> <li>• 공장용건축물·주택·기업부설연구소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외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당해 표지의 취득일부터 1년</li> <li>* 당해 사업관련 인기·허가·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기가 제한된 경우 및 건축허가 이후 척공이 이후 척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을 산함</li> <li>-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li> <li>-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척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li> <li>- 일반건축물(공장용·연수원용·별장용 및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li> </ul>	<p>법 제 3조</p> <p>영 제 23조</p> <p>영 제 11조</p>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면적 기준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방법(건축물비단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율기준 산정방법(건축물연면적 ÷ 지역별용적율 × 1.2)으로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봄</li> <li>건축물가액 기준 :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이 10/100을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로 봄</li> <li>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대상 건축물 및 사용검사대상 건축물로서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유휴토지에 해당(단, 재산세과세대상에 등록되거나 집단이주자 사용건축물 등으로서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제외)</li> </ul>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단,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사실상의 소유자로 함)</li> <li>-공유토지의 경우 : 각 지분권자(지분면적에 따라 납부)</li> <li>-소유권의 귀속 불분명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li> </ul>	법 제4조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과세기간의 과세표준=지가상승액 - 정상지가상승분 -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 - 적전 과세기간중 기준시가 하락분 - 기본공제 -지가상상액=과세기간종료일의 기준시가 - 과세기간제기준시가 -기본공제 = 200만원</li> <li>*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의 토지기준시기에 의함</li> <li>*과세표준 기간공제 : 과세기간중에 비과세지이었거나 유休토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공제</li> </ul>	법 제11조

구 분	내 용	· 근거 법령
과세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정결정과세기간의 과세표준=예 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예 정결정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정상지가상승액×150%+개량비등)</li> </ul> <p>* 개별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자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정상지가상승율보다 1.5배이상 급등한 지역)은 국세청장이 매년 예정결정지역으로 고시하며,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는 매 1년마다 과세 합</p>	법 제23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 : 3년(과세기간 개시연도의 1월 1일~과세기간 종료연도의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과세기간 : 1990. 1. 1~1992. 12. 31</li> <li>- 다음 과세기간 : 1993. 1. 1~1995. 12. 31</li> </ul> </li> <li>◦ 과세표준의 신고 :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세무서 장에게 신고</li> </ul>	<p>법 제6조 법 제23조</p> <p>법 제15조</p>
납세자 및 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유류토지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자진납부시 납부세액의 10/100 공제</li> </ul> </li> </ul>	법 제7조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 과세 표준의 30/100</li> <li>◦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 30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50/100</li> </ul>	법 제12조
기 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인이 그 보유토지를 유통토지 등과 기타 토지로 구분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 : 납부세액의 10/100 가산</li> </ul>	법 제19조
면제 또는 감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대상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 및 외국정부 소유토지</li> <li>-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li> </ul> </li> <li>◦ 개별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수이전 및 완료이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li> </ul> </li> </ul>	법 제5조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면제 또는 감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 대상토지(50/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주공·토개공·수자원공사 등)이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건설하고 있거나, 조성·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토지 :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용 토지</li> <li>◦ 양도소득세 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류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 공제</li> </ul> </li> <li>• 양도일이 토지초과이득세의 청정일로부터 3년이내 :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100</li> <li>• 양도일이 토지초과이득세의 청정일로부터 3년후 6년이내 :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60/100</li> </ul> </li> <li>- 필요경비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 세액공제방법(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과 필요경비 산입방법(양도세의 필요경비에 산입)중 선택하여 적용</li> </ul> </li> </ul>	법 제26조

## 6.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감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li> <li>◦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특별소비세(골프용품·수렵용 총포류 또는 골프장 입장료 외) 납세의무자</li> <li>◦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li> <li>◦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li> <li>◦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li> </ul>	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호별</th> <th>과 세 표 준</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1</td><td>조감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 면세액(제2호의 경우 제외)</td><td>100분의 20</td></tr> <tr> <td>2</td><td>조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이 차·배당소득 및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감면세액</td><td>100분의 10</td></tr> <tr> <td>3</td><td>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표금액 포함) 중 5억 원 초과금액</td><td>100분의 2</td></tr> <tr> <td>6</td><td>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td><td>100분의 10</td></tr> <tr> <td>8</td><td>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td><td>500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0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td></tr> </tbody> </table>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감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 면세액(제2호의 경우 제외)	100분의 20	2	조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이 차·배당소득 및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표금액 포함) 중 5억 원 초과금액	100분의 2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0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법 제5조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감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 면세액(제2호의 경우 제외)	100분의 20																		
2	조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이 차·배당소득 및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표금액 포함) 중 5억 원 초과금액	100분의 2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0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구 분	내 용	법 제7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시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li> <li>- 신고·납부 할 본세가 없는 경우 : 당해 본세 신고·납부의 예에 따름</li> <li>-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면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li> </ul>	근거법령
납세지 및 부과 청수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지 : 당해 본세의 납세지</li> <li>-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국고에 납입</li> <li>◦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 불성실신고 및 미달납부의 경우</li> <li>• 소득세·법인세의 감면을 받은 자,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특별소비세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세무서장</li> <li>• 관세의 감면을 받은자,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세관장</li> <li>•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와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시장·군수</li> </ul> </li> <li>◦ 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세를 분납하는 경우 :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분납금액 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li> <li>- 본세가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1,000만원 이하인 때 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초과시 50/100이하 금액)</li> </ul> </li> </ul> <p>※ 시행일 : 1994. 7. 1 ~ 2004. 6. 30까지 10년간 시행</p> <p>-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6. 12. 31까지 2년간만 부과</p>	법 제8조 법 제9조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가산세	◦ 남세의 무자가 기한내에 미납부 또는 미납부한 경우→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납세액의 10/100	법 제11조
비과세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m <sup>2</sup>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주공 또는 토개공으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국세청 법인 46012-870 : '95. 3. 31)	법 제4조

## II. 지방세

### 1. 취득세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li> <li>◦ 차량      ◦ 건설기계 등</li> </ul>	법 제105조, 106조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과세대상 물건 취득자(동기·등록 여부 불문)</li> </ul> <p>※ 취득으로 간주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개축·증축 : 당해 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함.</li> <li>◦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li> </ul>	법 제105조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의 지목변경 : 토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으로 봄</li> <li>◦ 과점주주 :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함</li> <li>◦ 취득당시의 가액,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액</li> <li>◦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함</li> </ul> <p>※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함</p>	법 제111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진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li> <li>◦ 보통정수 :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li> </ul> <p>※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사실상 비업무용토지가 훤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p>	법 제25조 법 제120조 법 제121조
납세자 및 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 :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li> <li>◦ 납부 : 시장·군수에게 납부</li> </ul>	법 제105조 영 제86조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물건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000</li> <li>◦ 별장·고급주택 등의 사치성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150/1,000</li> <li>※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자 아니한 토지→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li> <li>◦ 대도시내에서 공장·신설·증설 목적으로 과세물건 취득 및 과밀억제권 악안에서 사업용 부동산취득의 경우 : 세율의 500/100</li> <li>◦ 일반기산세(보통정수방법에 의함) : 무신고·미달신고납부=산출세액(부족세액) × 20/100</li> <li>◦ 중가산세(보통정수방법에 의함) : 무신고(4년내 매각)=산출세액 × 80/100</li> <li>※ 중가산세 제외내상</li> </ul>	<p>법 제112조 영 제84조의4</p>
기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내 등기·등록·취득신고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li> <li>◦ 지목·변경·건설기체·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li> </ul>	<p>법 제112조 영 제86조의2</p>
면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이내에 한함</li> <li>◦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li> <li>◦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 한함</li> <li>◦ 세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등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액에 대해 부과</li> <li>◦ 환지계획에 의거해 취득하는 토지</li> <li>◦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li> <li>◦ 사업시행자가 체비자 또는 보유자를 취득하는 경우</li> <li>◦ 신탁으로 인한 산업체산의 취득</li> <li>◦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li> <li>◦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li> <li>◦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li> <li>※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li> </ul>	<p>법 제109조 법 제110조</p> <p>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6장</p>

## 2. 등록세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과세대상	○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취득일부터 60일이내 등기의무	법 제124조 부동산등기 특 별조치법 제2조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함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 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함	제 13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 신고납부기한: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부동산등기 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 첨부)	제 150조의2
납세지 및 정수기관	○ 부과: 과세대상의 소재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부부: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법 제125조
세율	○ 부동산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농지→3/1,000, 기타→8/1,000 -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15/1,000(1.5%)(단,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은 8/1,000) - 그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농지→10/1,000(1%), 기타→30/1,000 - 소유권의 보존: 8/1,000 -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3/1,000 -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모두 각각 2/1,000 - 경매신청·가입류·가처분·가동기: 모두 각각 2/1,000 - 기타 등기: 매 1건 당 3,000원	법 제131조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세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 10/1,000</li> <li>- 저당권설정등록 : 2/1,000</li> <li>- 기타의 등록 : 매 1건 당 5,000원</li> </ul> </li> <li>◦ 신탁재산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 10/1,000(단, 사찰·교회 등은 5/1,000)</li> <li>- 범인등기의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액의 4/1,000</li> <li>-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납부시 : 산출세액(또는 부족세액) × 20/100</li> </ul> </li> <li>- 보통징수 방법에 의함</li> <li>- 대도시지역내 범인등기→당해 세율의 5배</li> </ul> </li> </ul>	<p>법 제132조 의 3</p> <p>법 제133조</p> <p>법 제137조</p>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취득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li> <li>- 환지체획에 의거해 취득하는 토지</li> <li>-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li> <li>-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li> </ul> </li> <li>-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li> <li>-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li> <li>-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측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li> <li>-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정정등기 등록</li> </ul> </li> </ul> </li> </ul>	<p>법 제127조 의 2</p> <p>법 제128조</p>
	<p>※ 주택건설에 대한 등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 60m<sup>2</sup>이하, 5세대이상)→면제</li> <li>•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 60m<sup>2</sup>이하, 5세대 이상)→면제</li> </ul> </li> <li>- 입주자 : 전용 40m<sup>2</sup>이하→면제, 전용 40m<sup>2</sup>~60m<sup>2</sup>→50/100 감면</li> </ul>	<p>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6장</p>

### 3. 면허세

구 분	부	용	근거 법령																								
과세대상	○ 각종의 면허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		법 제 161조																								
납세의무자	○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매년 면허세를 납부) -단,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이 경우 건축허기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		법 제 161조																								
과세표준	○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종별을 구분		법 제 161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매년 1월 1일에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		법 제 160조																								
납세지 및 정수기관	○ 관할소재지의 시·군		법 제 165조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th> <th>기타 시</th> <th>군</th> </tr> </thead> <tbody> <tr> <td>제1종</td><td>45,000원</td><td>30,000원</td><td>18,000원</td></tr> <tr> <td>제2종</td><td>36,000원</td><td>22,500원</td><td>12,000원</td></tr> <tr> <td>제3종</td><td>27,000원</td><td>15,000원</td><td>8,000원</td></tr> <tr> <td>제4종</td><td>18,000원</td><td>10,000원</td><td>6,000원</td></tr> <tr> <td>제5종</td><td>12,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법 제 164조
구분	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위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 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일 경과시 : 세액의 5/100</li> <li>◦ 체납된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 매 1월 경과시마다 12/1,000</li> <li>-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li> <li>◦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li> </ul>	법 제 27조 법 제 169조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li> <li>◦ 천재·지변·순실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li> <li>◦ 무역업·군납업·건설업의 신규면허</li> </ul>	법 제 163조

#### 4. 공동시설세

구 分	내 용	근거 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공동시설세</li> <li>◦ 토지 및 건축물→오물처리 공동시설세</li> </ul>	법 제 240조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li> </ul>	법 제 239조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계산의 과세시기표준액에 의함</li> </ul>	법 제 24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li> <li>- 납기 :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li> </ul> </li> <li>◦ 건축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li> <li>- 납기 :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li> </ul> </li> </ul>	법 제 242조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납세자 및 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 : 토지, 건축물 소재지의 서울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보통정수 방법에 의한 징수기관</li> </ul>	법 제 238조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공동시설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만원 이하의 가액 : 0.6/1,000</li> <li>- 1천만원 이하의 가액 : 0.8/1,000</li> <li>- 2천만원 이하의 가액 : 1.0/1,000</li> <li>- 3천만원 이하의 가액 : 1.2/1,000</li> <li>- 5천만원 이하의 가액 : 1.4/1,000</li> </ul> </li> <li>- 5천만원 초과하는 가액 : 1.6/1,000</li> </ul> <p>* 화재위험건축물(저유소·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세율의 20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물처리공동시설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0.3/1,000</li> </ul> </li> </ul> <p>*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이 경우 세율은 1/1,000을 초과할 수 없음)</p>	법 제 240조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일 경과시 : 세액의 5/100</li> <li>◦ 체납된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 매 1월 경과시마다 12/1,000</li> <li>-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li> </ul>	법 제 27조
면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을로 과세기준일 현재 미 만의 것</li> <li>◦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li> </ul>	영 제 201조 법 제 242조

## 5. 재산세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재산</li> <li>◦ 주택</li> </ul> <p>– 주거와 주거 이외의 겸용 건물 →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p>	법 제 181조 영 제 142조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li> <li>◦ 매수계약자 – 국가 등과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li> <li>◦ 사실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li> <li>◦ 위탁자 – 신탁법에 의해 등기·등록된 신탁제산</li> <li>◦ 사용자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li> <li>◦ 주변 상속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li> </ul>	법 제 182조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가액(과세 시가 표준액)</li> <li>◦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기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 시가표준액에 의한다.</li> </ul>	법 제 187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li> <li>◦ 납기 :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li> </ul>	법 제 189조
납세자 및 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li> </ul>	

구 分	세 용	내 용	세 용	세 용	근거법령
가산세 및 가산금	○ 주택	과 세 표 준	세율	법 제 188조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3/1,000 36,000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 56,000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116,000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30/1,000 356,0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50/1,000 856,0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70/1,000		
면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건축물 : 3/1,000</li> <li>※ 동일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책정되는 경우 → 높은 세율을 적용</li> <li>○ 납기일 경과시 : 세액의 5/100</li> <li>○ 체납된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 매 1월 경과시마다 12/1,000 →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li> <li>○ 대도시내에의 신설·증설공장 증과 = 기본세율(3/1,000) × 500/100(최초 평세기준일부터 5년간 증과함)</li> <li>※ 신고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 규정은 없음 → 단,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 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평세대상에 등재 할 수 있음</li> <li>○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평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비과세</li> <li>○ 재산세 평세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li> <li>○ 전용면적 60m<sup>2</sup>이하,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 세액의 50/100 감면</li> <li>○ 전용면적 40m<sup>2</sup>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간 : 50년) → 면제</li> </ul>	<p>법 제 27조</p> <p>법 제 188조</p> <p>법 제 192조</p> <p>법 제 183·184조</p> <p>영 제 135조</p> <p>의 3</p> <p>특별시 구세</p> <p>감면조례(준칙) 제 6장</p>		

## 6. 종합토지세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과세대상	◦ 모든 토지	법 제234조의 8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단,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 당하는 면적</li> <li>◦ 공부상의 소유자→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li> <li>◦ 해 당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그 매수계약자</li> <li>◦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위탁자</li> <li>◦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사용자</li> </ul>	법 제234조의 9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시가표준액에 의 함(토지등급가액)</li> <li>◦ 종합합산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외)의 가액을 합한 금액</li> <li>◦ 별도합산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의 합산한 금액</li> <li>◦ 분리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li> <li>•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가액</li> <li>•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종소유 임야의 가액</li> <li>• 끌표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가액</li> </ul> </li> </ul>	법 제234조의 15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li> <li>◦ 납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li> </ul>	법 제234조의 17
납세자 및 징수기관	◦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법 제234조의 10

구 분	세 울	(1) 중합 합산		근거법령 법 제 234조 의 16
		과 세 표 준	세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1억 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2) 별도 합산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3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1,64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3,2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8,24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억 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6억 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 분리 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과세 표준액의 1/1,000 ◦ 풀포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과세 표준액의 50/1,000 ◦ 기타→3/1,000(주택건설용 토지→사업승인일로 부터 3년 이내)				규칙 제 194조 의 15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 일 경과시 : 세액의 5/100</li> <li>◦ 체납된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 매 1월 경과시마다 12/1,000</li> <li>-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li> </ul>	법 제27조
면제 또는 감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m<sup>2</sup>이하,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세율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합</li> <li>◦ 전용면적 40m<sup>2</sup>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 50년)→면제</li> </ul>	특별시 구세 감면조례(준 칙) 제6장

## 7. 사업소세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할</li> <li>◦ 종업원 할</li> </ul>	법 제244조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li> <li>-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li> <li>- 종업원 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li> </ul>	법 제244조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li> <li>◦ 종업원 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li> </ul>	법 제247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li> <li>◦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li> <li>◦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 할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li> <li>- 재산할 :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li> </ul> </li> </ul>	법 제250조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납세자 및 정수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li> <li>◦ 종업원 할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li> </ul>	법 제 246조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math>1m^2</math>당 250원</li> <li>◦ 종업원 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li> </ul>	법 제 248조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기 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20/100에 상당하는 금액</li> <li>◦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재산할 세율의 200/100</li> </ul> <p>※ 신고의무불이행시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없음→단,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 할 수 있음</p>	<p>법 제 248조</p> <p>법 제 250조</p>
■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할 : 당해 사업소의 면적 이 <math>330m^2</math>이하</li> <li>◦ 종업원 할 :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li> </ul>	법 제 249조

## 8. 도시계획세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li> <li>- 건축물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부문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li> </ul> </li> </ul>	법 제 235조 영 제 195조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li> <li>◦ 건축물 :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li> </ul>	법 제 235조 의 2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또는 건축물의 가액(과세시기표준액)으로 한다.</li> </ul>	법 제 236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li> <li>- 납기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li> </ul> </li> <li>◦ 건축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li> <li>- 납기 :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li> </ul> </li> </ul>	법 제 238조 의 2
납세지 및 정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건축물 소재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보통정수방법에 의한 정수율을 정하는 세율 : 가액의 2/1,000</li> <li>◦ 조례가 정하는 세율 : 가액의 3/1,000을 초과할 수 없다.</li> </ul>	법 제 235조 법 제 237조
세율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일 경과시 : 세액의 5/100</li> <li>◦ 체납돈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 매 1월 겨우가시마다 12/1,000</li> <li>◦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li> </ul>	법 제27조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li> <li>–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1,000원 미만인 경우</li> </ul> </li> <li>◦ 건축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li> <li>–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li> </ul> </li> </ul>	법 제238조

### III. 부 담 금

#### 1.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li> <li>–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ul> </li> <li>◦ 대상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대도시 : 660m<sup>2</sup> 이상</li> <li>– 6대도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 990m<sup>2</sup> 이상</li> <li>– 비도시계획구역인 지역 : 1,650m<sup>2</sup> 이상</li> </ul> </li> </ul>	<p>법 제5조</p> <p>영 제4조</p>
납부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위탁이나 도급을 한자</li> <li>◦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토지소유자</li> <li>◦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그 지위를 승계한 자</li> </ul>	<p>법 제6조</p>
부과·징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 : 전교부장관(단,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부과할 수 있다)</li> <li>◦ 징수기관 : 전교부장관</li> </ul> <p>※ 전교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에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법 제14조</p> <p>법 제23조</p>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부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이익의 50/100</li> </ul> <p>※ 부과기준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p>	법 제13조
가산세 및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내 미납부 또는 미납부세액의 5/100 가산 징수</li> <li>◦ 체납금의 납부기한 경과시 : 매 1월마다 12/1,000(단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li> </ul>	<p>법 제8조</p> <p>법 제18조 (국세징수법 제21조, 22조)</p>
면제 또는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자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li> <li>◦ 감면(5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자체 시행 개발사업</li> <li>- 경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li> </ul> </li> </ul>	법 제7조

##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li> <li>- 6대 도시 지역의 택지 : 660m<sup>2</sup> 이상</li> <li>- 6대 도시 이외의 지역 택지 : 990m<sup>2</sup> 이상</li> <li>- 기타 지역의 택지 : 1,320m<sup>2</sup> 이상</li> <li>◦ 범인이 소유하는 택지</li> <li>※ 주택건설용 택지</li> </ul> <p>-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4년내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p>	법 제7조 법 제16조 영 제18조
납부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소유자</li> <li>◦ 택지를 소유하는 법인</li> <li>※ 납부의무자—공부상의 소유자(단,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li> </ul> <p>가구별 택지—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그 소유 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p>	법 제21조
부과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기준일 : 매년 6월 1일(단, 부과기준일 도래전에 택지를 처분하거나 대리개별이 척수되는 등의 신고한 택지에 대해서는 처분일 또는 대리 개별의 척수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li> <li>◦ 부과대상신고 :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신고</li> <li>◦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월이상 3월 이내로 한다.</li> </ul>	법 제25조 법 제26조 영 제32조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부과기준일 및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납부기한 :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li> <li>* 부담금의 부과기간 :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부과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li> </ul>	법 제22조
부과·정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교통부장관</li> <li>시장·군수(건교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li> </ul>	법 제27조 법 제38조
부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택지 : 연 6/100(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 : 연 4/100)</li> <li>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초과하는 택지 : 연 11/100(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 : 연 7/100)</li> <li>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연 7/100</li> <li>처분 또는 이용 개발의무기간내에 처분 또는 이용 개발하지 아니한 택지 : 연 11/100</li> <li>부담금의 부과기간이 1년미만인 택지에 대한 부과율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ul> <p>* 부담금의 산정 : 부담금=부과기준일 현제의 택지가격 × 부과율(택지가격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p>	법 제24조 법 제23조
기산금·벌칙	<p>*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취득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한 자→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제 약체결 당시의 택지가격의 30/100 이하)</li> <li>초과소유부담금의 면탈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한 자→계약 당시 택지가격의 30/100 이하의 벌금</li> <li>임대용으로 취득한 택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한 자→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li> </ul> <p>* 벌금산정을 위한 택지가격→공시지가 기준</p>	법 제39조 법 제40조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가산금·별차	<p>※ 법인의 대표자나 범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범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200만원)</li> <li>◦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li>◦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li> </ul>	
면제·감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 또는 이용·개발한 택지</li> <li>◦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단,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제외)</li> </ul> </li> <li>◦ 주택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li> <li>◦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해 불가능한 택지(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li> <li>◦ 차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단,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li> <li>◦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li> <li>◦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차공이 제한된 택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선고서 : 산정된 부담금의 5/100 공제</li> </ul> </li> </ul>	<p>법 제20조 영 제26조</p> <p>법 제26조</p>

### 3. 전용부담금(산림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부과대상	<p>(1) 농특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토지 등</li> </ul> <p>(2) 산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은 토지</li> <li>◦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받은 토지</li> <li>◦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외체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li> </ul>	농특법 45조 의 2 산림법 20조 의 3
납부의무자	<p>(1) 농특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li> <li>◦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li> </ul> <p>(2) 산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인가 등 처분을 받은 자</li> <li>◦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li> <li>◦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외체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li> </ul>	농특법 45조 의 2 산림법 20조 의 3
부과기준일 및 납기	<p>(1) 농특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기준일 :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한 때</li> <li>◦ 납기 :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6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li> </ul> <p>(2) 산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 :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이상 9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li> </ul>	농특법 시행령 제52조의 3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의 5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정수기관	<p>(1) 농특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부장관</li> <li>◦ 수납대행 : 농어촌진흥공사</li> </ul> <p>(2) 산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장</li> <li>◦ 수납대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li> </ul>	<p>농특법 45조 의 2</p> <p>농특법 시행령 제52조의4</p> <p>산림법 20조 의 3</p>
부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0/100</li> </ul> <p>※ ◦ 대체 농지 조성지 – 전 7,141원/평, 단 11,901원/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 조림비 – 2,301원/평</li> </ul>	<p>농특법 시행령 농수산부고시 92-36호</p> <p>산림청고시</p> <p>95-1호</p>
별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허가의 취소</li> </ul> <p>–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p> <p>–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p>–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p> <p>– 지정된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때</p> <p>–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p>	<p>농특법 제45조의 2</p> <p>산림법 제19조</p> <p>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p> <p>– 전용지역 안의 농지를 허가없이 전용하였거나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5월 이하의 벌금</p> <p>– 전용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없이 전용하였거나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3월 이하의 벌금</p>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별 치	<p>※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p> <p>※ 농립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p>	
면제 또는 감면사항	<p>(1) 농특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 – 전원개발사업시설</li> <li>◦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턱지개발사업(70/100 면제)</li> <li>–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70/100 면제)</li> <li>–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도심지 개발사업→50/100 면제</li> </ul> </li> </ul> <p>※ 주택건설사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p> <p>(2) 산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 인가·허가 등 처분을 받은 자→산림의 형질변의 3 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에 한한다.</li> <li>◦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li> <li>◦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li> </ul>	<p>농특법 시행령 제52조의 2</p> <p>산림법 20조</p>

## IV. 채권 매입

### 1. 제1종 국민주택재권

#### (1) 매입대상자(주축법 제1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2) 매입대상 및 금액(주축법시행령 별표3 부표)

■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	매 입 대 상	금 액 (원)
◦ 주거 전용건축물 : 전용면적 85m <sup>2</sup> 초과 주택(공동주택은 세대 당)		
◦ 기타 건축물 : 연면적 165m <sup>2</sup> 이상(공장용은 500m <sup>2</sup> )		
가. 주거전용건축물		
(1) 연면적 85m <sup>2</sup> 초과 100m <sup>2</sup> 미만	연면적 m <sup>2</sup> 당 300	
(2) 연면적 100m <sup>2</sup> 이상 132m <sup>2</sup> 미만	공동주택 m <sup>2</sup> 당 1,000, 단독주택 m <sup>2</sup> 당 1,000	
(3) 연면적 132m <sup>2</sup> 이상 165m <sup>2</sup> 미만	공동주택 m <sup>2</sup> 당 2,000, 단독주택 m <sup>2</sup> 당 2,400	
(4) 연면적 165m <sup>2</sup> 이상 231m <sup>2</sup> 미만	공동주택 m <sup>2</sup> 당 4,000, 단독주택 m <sup>2</sup> 당 5,000	
(5) 연면적 231m <sup>2</sup> 이상 330m <sup>2</sup> 미만	연면적 m <sup>2</sup> 당 10,000	
(6) 연면적 330m <sup>2</sup> 이상 660m <sup>2</sup> 미만	연면적 m <sup>2</sup> 당 17,000	
(7) 연면적 660m <sup>2</sup> 이상	연면적 m <sup>2</sup> 당 28,000	

내    입    대    상	금	액 (원)
<p>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p> <p>(1)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p> <p>(2) 연와조, 석조의 건축물</p> <p>(3) 시멘트벽돌, 블록조</p>	연면적 $m^2$ 당 1,300 연면적 $m^2$ 당 1,000 연면적 $m^2$ 당 600	
<p>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혼합된 건축물</p> <p>(1)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나목을 적용</p> <p>(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의 연면적이 <math>165m^2</math> 이상인 경우→(1)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p>		
<p>■ 건설업 면허</p> <p>■ 해외건설업등록</p> <p>■ 부동산 등기</p> <p>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 건축허가 신청때에 채권매입자는 보존등기시 매입 체외</p> <p>(1) 주거전용건축물 :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기준            (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p>	자본금의 2/1,000 자본금의 1/1,000	과세 시가표준액의 20/1,000 과세 시가표준액의 35/1,000 과세 시가표준액의 30/1,000

매 입 대 상	금 액 (원)
(다)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파세 시가표준액의 40/1,000 파세 시기표준액의 35/1,000
(라)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파세 시가표준액의 50/1,000 파세 시기표준액의 45/1,000
(마)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파세 시가표준액의 60/1,000 파세 시기표준액의 55/1,000
(바)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파세 시가표준액의 70/1,000 파세 시기표준액의 65/1,000
(2) 주거전용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파세 표준액 기준	
(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파세 시가표준액의 25/1,000 파세 시기표준액의 20/1,000
(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파세 시가표준액의 40/1,000 파세 시기표준액의 35/1,000
(다) 1억 이상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파세 시가표준액의 50/1,000 파세 시기표준액의 45/1,000

내 용	금 액 (원)
나. 상속(증여등 기타 무상취득하는 경우 포함) : 과세 표준액 기준	
(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과세 시가표준액의 25/1,000
(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과세 시가표준액의 20/1,000
(다)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과세 시가표준액의 40/1,000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	과세 시가표준액의 3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억 원으로 함)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자본금의 2/1,000
■ 주택건설지정업자 지정	1,000,000
■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도급 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등으로 증액된 경우 포함)	계약금액의 1/1,000

## 2. 도시철도체권(도시철도법)

### (1) 매입대상자(법 제13조, 영 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 (2) 매입대상 및 금액

매 입 대 상	금 액 (원)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가. 건설공사도급계약(도시철도체권 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도급액의 100분의 5 이내
나.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를 제외 한다)	용역계약 또는 물품계약의 100분의 2 이내
■ 토지형질변경허가	3.3제곱미터당 30,000

※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시→매입의 면제

-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m<sup>2</sup>(공·용면적 포함시→70m<sup>2</sup>) 이하인 주택
- 그 외의 주택→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토지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에 한함